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문제편 241~해설편 388p 번호 : 15	문제-보기(지문)	<p>[문제편 241p & 해설편 388p]</p> <p>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자는?</p> <p>①~②, ④~⑤ 변경 없음</p> <p>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</p>	<p>[문제편 241p & 해설편 388p]</p> <p>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자는?</p> <p>①~②, ④~⑤ 변경 없음</p> <p>③ 택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둘 이상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직원을 채용하여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</p>
		수정 사유	법령 개정으로 인한 수정
해설편 56~56p 번호 : 09	해설	<p>09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</p> <p>①~③, ⑤ 변경 없음</p> <p>④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</p> <p>노동위원회는 천재·사변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(근기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).</p>	<p>09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</p> <p>①~③, ⑤ 변경 없음</p> <p>④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</p> <p>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(근기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).</p>
해설편 238~238p 번호 : 20	해설	<p>20 甲은 2020.2.1.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,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乙에게 청약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</p> <p>①~④ 변경 없음</p> <p>⑤ 乙이 위 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020.2.10. 발송하여 甲에게 2020.2.15. 도달하였다면 甲과 乙 간의 계약성립일은 2020.2.15.이다.</p> <p>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, 승낙기간 내 승낙의 부도달을 해제조건으로 승낙통지 발송 시 계약이 성립한다는 해제조건설(다수설)에 의할 경우, 甲에게 2020.2.15.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면, 계약성립일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2020.2.10.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</p>	<p>20 甲은 2020.2.1.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,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乙에게 청약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</p> <p>①~④ 변경 없음</p> <p>⑤ 乙이 위 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020.2.10. 발송하여 甲에게 2020.2.15. 도달하였다면 甲과 乙 간의 계약성립일은 2020.2.15.이다.</p> <p>乙의 승낙의 의사표시인 편지가 甲에게 2020.2.15. 도달하였으므로,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어떠한 견해에 의하더라도, 민법 제531조에 의하여 乙이 편지를 발송한 2020.2.10에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</p>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해설편 309~309p 번호 : 25	해설	<p>25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?</p> <p>①~③, ⑤ 변경 없음</p> <p>④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,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</p> <p>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(민법 제444조 제1항).</p>	<p>25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?</p> <p>①~③, ⑤ 변경 없음</p> <p>④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,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</p> <p>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(민법 제444조 제1항).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(민법 제441조 제2항).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 한다(민법 제425조 제2항).</p>
해설편 403~403p 번호 : 15	해설	<p>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</p> <p>① 변경 없음</p> <p>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<p>산재법 제5조 제2항</p> <p>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산재법 제5조 제3항 제1호</p> <p>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산재법 제5조 제3항 제2호</p> <p>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산재법 제5조 제3항 제4호</p>	<p>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</p> <p>① 변경 없음</p> <p>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<p>산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</p> <p>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산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</p> <p>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산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2호</p> <p>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산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</p>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